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24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1. 17.

고성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11. 20.

다. 상정·의결일자 : 2023. 11. 28.

산업경제위원회 상정·원안가결

2. 개정이유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 정비(안 제5조 및 6조)

1) 당연직 위원 구성 변경

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관련 규정 신설(안 제7조)

다.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및 등록심사 관련 규정 개정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확대(안 제8조)

2)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신청서류 변경(안 제9조)

라.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운행지역 관련 규정 개정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시간 변경(안 제11조)

2)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 변경(안 제14조)

마.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 개정

1)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등(안 제15조)

2)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안 제16조)

3)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안 제1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자체개선안 동의 [복지지원과-40442(2023. 10. 23.)]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고성군공고 제2023-1549호
 - 가) 예고기간: 2023. 10. 12. ~ 2023. 11. 1.(20일간)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4)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제정 목적

-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 전면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및 등록심사,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운행지역,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주요 검토 내용

- (안 제1조 ~ 제3조)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4조 ~ 제6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 전 조례 내용 대비 안 제5조(위원회 구성) 제4항 당연직 위원 중 국장을 제외하고자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7조)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인용 및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8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 전 조례 내용 대비 안 제2항 제1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1등급 ~ 3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또는 전문의 진단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추가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9조 ~ 제12조)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이용 기간 및 운영,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13조 ~ 제14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운행 지역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용요금의 경우 상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행차량의 종류를 구별하여 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15조 ~ 제17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기능,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운행 지역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종합검토 의견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목적과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7. 토 론 : 없음.

8. 심사결과 : 2023. 11. 28. 원안가결